

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지원(KIURI) 선정계획 공고 FAQ

<연구재단 생명공학2팀>

1 신청 기본사항 관련

Q1-1. 3책 5공이 뭔가요?
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32조(연구수행에의 전념)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, 그 중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이를 줄여 '3책 5공' 이라고 말합니다.

Q1-2. 참여율이 뭔가요?

-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(연구자)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(연구자)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.
-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%*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*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%

Q1-3. 연구단장의 경우 3책5공에 해당 되는지요?

- 동사업의 경우 3책5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단, 연구단장의 경우 SRC, ERC, BK21, LINC+ 등 타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와 중복수행은 불가능합니다.

Q1-4. 참여연구원(포닥)의 경우 3책5공에 해당 되는지요?

- 참여연구원(포닥)의 경우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32조(연구수행에의 전념)에 따른 3책5공에 해당됩니다.

Q1-5. 연구단장의 동사업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?

- 동사업의 목표(연구인력 양성 및 신진인력 연구력 향상 등)를 고려하여 연구단장의 동사업 참여율은 0%입니다.

Q1-6. 참여연구원(포닥)의 과제 참여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?

- 참여연구원(포닥)은 동사업에 참여율 70%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

Q1-7. 참여연구원(포닥)의 경우 타과제와 중복 참여가 가능한지요?

- 참여연구원(포닥)은 동사업에 참여율 70% 이상 유지해야 하며, SRC, ERC, 기초연구실, 대학중점연구소, BK21, LINC+ 등 집단연구사업과는 인건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참여 불가능합니다. 단, 잔여 참여율 30% 내에서 개인연구 신청 및 수행은 가능합니다.

Q1-8. 참여연구원(포닥)의 경우 박사학위 과정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가능한가요?

- 동 사업은 이공계박사(포닥 등)의 연구·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성장경로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박사학위 과정생 및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동 사업 참여연구원(포닥)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Q1-9. 기 고용된 교내 포닥도 동사업 참여연구원(포닥)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한가요?

- 대학에 기고용 되어 있는 교내 포닥도 동사업 연구단으로의 소속 발령 및 고용계약 체결, 참여율 70% 이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합니다.

Q1-10. 참여연구원(포닥) 당 지원금 1억원 중 인건비 계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
- 동사업은 참여연구원(포닥)의 연구인재 육성과 함께 연구역량 강화 또한 중요한 목적으로 지원금 1억원 중 인건비 5천만원, 연구비 5천만원 정액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.

Q1-11. 참여연구원(포닥)의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- 참여연구원(포닥)의 지원기간은 최대 3년(사업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사업 종료 시까지)입니다.

Q1-12. 동일 대학에서 단독 연구단 및 컨소시엄 구성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요?

- 중복신청 불가능합니다. 하나의 대학은 단독 연구단 또는 컨소시엄 참여연

구단 중 하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Q1-13. 분교의 경우 별개의 대학으로 간주하나요?

- 연세대 원주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건국대 충주캠퍼스, 고려대 세종캠퍼스, 한양대 안산캠퍼스 등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는 본교와 별도의 대학으로 간주합니다.

Q1-14. 컨소시움 형태로 신청할 경우 참여인력 규모 및 참여 대학 수에 제한이 있나요?

- 컨소시움 형태로 신청할 경우, 주관대학을 포함하여 3개 대학까지 구성 가능하며 참여연구원(포닥) 규모는 단독연구단과 동일하게 10명 이상 20명 이하입니다.

Q1-15. 참여연구원(포닥)의 경우 자교출신 박사학위 채용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?

- 참여연구원(포닥) 구성 시 동사업의 수혜를 받는 포닥의 경우 주관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는 70% 미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. 컨소시움 형태의 경우 컨소시움 참여대학 전체를 자교로 간주합니다.

Q1-16. 참여연구원(포닥)의 이직,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추가채용은 가능한가요?

- 참여연구원(포닥)의 이직, 퇴직, 공직임명, 사망, 질병, 육아 등으로 결원 발생시 차년도 사업 개시 전까지 결원 발생 인원 만큼 추가 채용하여 최대 3년(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사업기간 종료시)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 이 경우에도 자교출신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70%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. 단, 차년도 사업개시 전까지 추가 채용을 못한 경우, 당해연도 해당분의 지원비는 반납하여야 합니다.

Q1-17. 연구단장 및 참여연구원(포닥)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?

- 연구단장 및 참여연구원(포닥)에 대한 연구수당 계상 및 집행은 불가능합니다. 단, 간접비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 가능합니다.

Q1-18. 신청분야 및 연구분야는 어느 수준으로 정하나요?

-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수준(중분류 간 융합 가능)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.

※ 예시: 융합바이오 KIURI연구단, 첨단소재물성 KURI연구단 등

Q1-19. 멘토교수의 구성 및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?

- 멘토교수는 신청 기관 소속 교수로 구성하며 참여연구원(포닥)이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간·시설·장비 등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및 연구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단, 참여연구원(포닥)의 학위 지도교수는 해당 참여연구원(포닥)의 멘토 역할 수행이 불가능합니다(Inbreeding 금지)

Q1-20. 연구자문단의 구성 및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?

- 연구자문단은 신청 기관 소속 교수로 구성하며 연구단의 연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.

2 연구개발계획서 등 작성·제출 관련

Q2-1. 연구개발계획서 제본(Hard-copy)을 제출해야 하나요?

- 아니요.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.

Q2-2.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?

-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.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,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.
-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.

Q2-3. 연구자 신청기간(신청 마감일)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
- 연구자 신청 기간: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,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
- 주관기관 승인 기간: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
- ※ 연구자 신청 기간에 신청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 승인 기간 중 연구개발 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
-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,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.

Q2-4.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과제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(hwp)을 제출합니다.
-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별로 기관담당자(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)가 기한 내에 반드시 ‘기관승인’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.

Q2-5.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?

- 절대 아닙니다.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*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.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.
- * 연구개발계획서 상 ‘양식 AXXX’ 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
-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~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들은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.

Q2-6.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?

- 연구개발계획서 내 사업계획서의 목차 I(신진연구인재 육성 비전 및 계획) ~ V(연구기반 및 지원계획)까지 해당 분량 제한에 해당되며 30페이지 이내입니다.(연구개발계획서 표지, 연구분야 및 분류표, 연구단 개요표, 연구비 총괄표 및 붙임은 분량제한에 미포함)

3 참여기업 관련

Q3-1. 연구단 구성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?

- 주관대학은 지원분야 관련 참여기업*을 반드시 모집·구성해야 합니다.
- * 중소·벤처·중견기업 참여 권고(대기업만으로 구성 불가)

Q3-2.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?

-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(기초연구법)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(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)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‘기업부설 연구소’ 또는 ‘연구개발 전담부서’가 있어야 합니다.
- 세부 또는 위탁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.

Q3-3. 참여기업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?

- 참여기업은 기본펀딩(멤버십*)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연구단과 연구정보를 공유합니다.
- 연구단과 기업은 정기교류**를 실시하고 참여연구원(포닥)(팀)이 계획 또는 수행 중인 과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추가로 연구비 매칭, 시설장비 지원도 가능합니다.

* 멤버십 세부사항은 대학-기업간 협의를 통하여 정함

** 연구단 연구주제·내용 세미나, 기업 관심분야 공유 등

Q3-4. 참여기업의 기본펀딩(멤버십)과 매칭펀드는 어떻게 다른가요?

- 기본펀딩(멤버십)은 동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현금 지원을 의미합니다.
- 매칭펀드는 기본펀딩(멤버십), 연구비 매칭, 신규 채용, 시설장비 활용·지원 등 현금과 현물 지원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.

Q3-5. 참여기업의 매칭펀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?

- 참여기업은 기본펀딩(멤버십), 연구비 매칭, 신규 채용, 시설장비 활용·지원 등 현금과 현물 지원 전체를 포함하여, 신청 정부출연금(직접비+간접비) 대비 이학분야는 10% 이상, 공학 및 융합 등 기타분야는 25% 이상이 필요하며 관련 사항은 추후 평가 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.

Q3-6. 매칭률 10%, 25%는 개별기업 마다 적용되나요?

- 아닙니다. 연구단은 매칭기업이 여러 개일 경우 개별 기업과의 협약이나 협력 내용에 따라 기업별 매칭률을 정하면 되며 10%, 25%는 전체 참여기업 매칭률의 합계를 의미하며, 이 비율은 사업 전체를 통해 달성하는 목표치입니다.

4 사업비 집행 관련

Q4-1. 2020년 1차년도 참여연구원(포닥) 1인당 직접비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?

- 2020년 1차년도는 5월1일부터 2021.2월28일 까지 10개월로 1인당 직접비 지원 단가는 83.3백만원(인건비 41.6백만원 내외 + 연구비 41.6백만원 내외)입니다. 2차년도 부터는 12개월분 1억원(인건비 50백만원 + 연구비 50백만원)

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Q4-2. 참여연구원(포닥)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?

- 참여연구원(포닥)의 인건비 5천만원(12개월분)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할 수 없으며 월급여의 형태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.

Q4-3. 사업비 선지급 15%의 지급 시기 및 집행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?

- 사업비 15% 선지급은 최종 선정 및 협약이 종료된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.
- 선지급액은 간접비로 우선 편성하며 사업착수·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집행하시면 됩니다.
- ※ 참여연구원(포닥) 인건비 등 직접비는 집행 불가하며 사업비 확정전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장점검 이후 잔여 사업비 수령 시 소급집행

Q4-4. 참여연구원(포닥)의 4대보험료, 퇴직금 등은 별도로 지급하나요?

- 아닙니다. 참여연구원(포닥)의 인건비에는 4대보험료, 퇴직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.